

## 군산시 공고 제2020 - 871호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가.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사용을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 나. 인증기 등 요금계기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화된 수수료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입증지 용어 정의 재규정(안 제2조)
- 나. 수입증지(인영)의 종류, 규격 및 모양(안 제3조)
- 다.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법 규정(안 제4조)
- 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사용, 인증계기 설치시 시보 등 고시(안 제5조)
- 마.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안 제6조) : 시금고 등 납입, 일일결산 서식 마련
- 바. 수입금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 신설(안 제7조)

사.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시민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전화 063-454-2512, FAX 063-453-918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세외수입계(454-25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현행)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입증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 ②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기 등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인증기관명
3. 인증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번호, 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

년월일	기기구분	계기 고유번호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 개시일	기타 사항	관리책임		결재		
							정	부	담당자	계장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년월일	기기구분	전일까지 금액(A)	금일발행(B)		금일결손(C)		금일집계(D) B-C		금일까지 누계금액 (E=A+D)	결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계장	과장

[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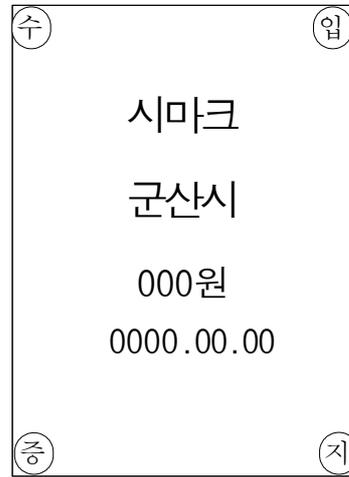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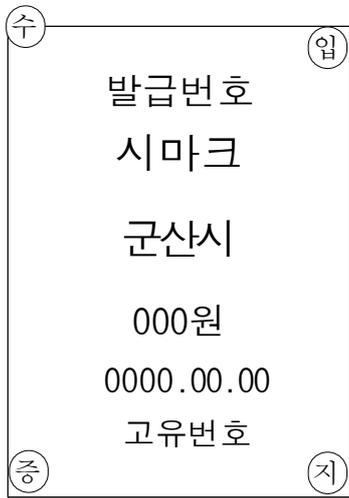
###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3조제2항 관련)

가. 규격 : 가로 2,7cm, 세로 3,0cm

나. 모양

· 수입증지 요금 인증기

· 무인민원발급기 등



**붙임**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현행)**

**군산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2001.06.15 조례 제 479호  
(일부개정) 2011.08.01 조례 제 995호

관리책임부서 : 시민납세과  
연 락 처 : 4542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증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증지의 조제 등)**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시장은 매년 증지의 조제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시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조제 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부구하고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설 2001. 06.15><개정 2011.08.01>

①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8.01>

②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11.08.0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40원권·50원권·60원권·100원권·200원권·300원권·400원권·500원권·700원권·1,000원권·5,000원권 및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및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의 인수 및 보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8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증지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 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민원실내에 서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다른 곳에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대금은 증지액면정액의 100분의5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5로 하고 시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의 정산)** <조제목 개정 2001. 06.15><개정 2011.08.01>

①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6.15>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납입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15><개정 2011.08.01>

④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06.15><개정 2011.08.01>

**제15조(증지의 소인)** ①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즉시 소인 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6.15><개정 2011.08.01>

②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 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7조(증지의 교환 및 환매)** ①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환·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교환증·증지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 한다.

④시금고는 제3항의 증지교환증·증지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교부 또는 증지 매도금액으로 환매 하여야 한다.

**제1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시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1999.11.19 조례제 3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지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조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산시와 옥구의 수입증지는 전량 소모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③(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06.15 조례제 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01 조례제 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20 - 872호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1.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한국조폐공사 종이수입증지 제작중단 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추진」 방침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 미사용에 따라 군산시 수입증지 발행, 보관 등의 취급 규칙이 필요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 규칙」을 폐지함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시민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전화 063-454-2512, FAX 063-453-9183)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세외수입계(454-251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규칙 폐지안 1부.  
 3.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규칙(현행)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규칙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규칙 폐지안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군산시 수입증지 취급 규칙(현행)**

군산시수입증지취급규칙

(전문개정) 2000.03.22 규칙 제237호

관리책임부서 : 시민납세과

연 락 처 : 45424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수입증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판보관) 수입증지의 원판은 한국조폐공사에 보관한다.

제3조(발행) 수입증지의 발행일시, 종류 및 수량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훼손품 처리) 수입금출납원은 수입증지 훼손품을 인수 또는 교환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 진위조사)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관계공무원 수입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수입증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5.01.09 규칙제 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2 규칙제 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고시 제2020 - 5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파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은파유원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0년 4월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23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파유원지)사업
  - 나. 명 칭 : 은파관광지(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도로확폭 및 정비
    - 은파유원지 조성계획도로 중로3-1호(내부순환도로)
    - ↳ 당초 : 5,634㎡ ⇒ 변경 : 6,643㎡(L=405m, B=12m)
  - 나. 야외공연장 정형화 해당구간 시행
    -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야외공연장(53) : A=585㎡
    - ↳ 당초 : 6,398㎡ ⇒ 변경 : 6,913㎡(585㎡ : 금회 정형화 해당구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중로3-1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1222	32	도	404	120	군산시					
2	나운동	1222	36	잡	1,626	4	군산시					
3	나운동	1222	37	도	57	14	군산시					
4	나운동	1222	38	도	112	9	군산시					
5	나운동	1222	39	도	52	6	군산시					
6	나운동	1223	4	유	16,777	159	군산시					
7	나운동	1233	1	전	192	10	군산시					
8	나운동	1233	3	도	421	7	전라북도					
9	나운동	1233	8	도	25	9	군산시					
10	나운동	1233	9	도	2,665	1,798	군산시					
11	나운동	1234		도	225	139	군산시					
12	나운동	1234	5	전	803	139	군산시					
13	나운동	1234	6	전	251	144	문*례	군산시 중동 265-39	전*세	군산시 중동 265-39	근저당, 지상권	
14	나운동	1234	7	잡	7,103	439	군산시					
15	나운동	1234	30	전	373	54	군산시					
16	나운동	산364	5	임	173	105	국(국토해양부)					
17	나운동	산366	15	임	774	16	군산시					
18	나운동	산366	21	임	231	26	박*자	군산시 금암동 1	전*세	군산시 중동 265-39	근저당	3421/6843
							김*일	군산시 나운동 831 주공2아파트3동106호				1141/6843
							문*례	군산시 중동 265-39				2281/6843
19	나운동	산367	4	도	226	8	군산시					
20	나운동	산367	5	도	2,449	1,670	군산시					
21	나운동	산368	4	도	793	680	군산시					
22	나운동	산368	6	도	231	142	군산시					
23	나운동	산369	1	도	79	60	이*영	미등기				사정
24	나운동	산370	4	도	171	57	군산시					
25	나운동	산370	5	도	583	511	군산시					
26	나운동	산373	6	도	269	147	군산시					
27	나운동	산373	7	도	670	167	군산시					
28	나운동	산373	8	도	21	3	군산시					
계					37,756	6,643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야외공연장(53)]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나운동	1222	17	전	116	3	군산시					
2	나운동	1222	31	전	116	14	군산시					
3	나운동	1222	35	잡	212	209	군산시					
4	나운동	1222	36	잡	1,626	359	군산시					
계					2,070	585						

군산시 고시 제2020 - 53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8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소룡동 1535-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83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0년 4월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53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소룡동 중로2-83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중로2-83 : L=56m, B=15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5.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소룡동	1535-15	대	307.5	223	군산시 공단대로 608(소룡동)	나순*	근저당 설정 군산시 해망동 1003-45	군산제일 신용협동 조합	지분 1/2
						군산시 공단대로 608(소룡동)	유영*			지분 1/2
2	소룡동	1575	도	18,847.6	459		군산시			
3	소룡동	1535-18	대	22.1	22.1	군산시 칠성안1길 41, 501호(산북동)	김순*	근저당 설정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군산시청 지점)	주식회사 전북은행	
4	소룡동	1535	대	233.7	233.7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 562-20	안득*	근저당, 지상권 설정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주식회사 전북은행	
합계				19,410.9	937.8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물건의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노선	NO.	소재지			개소	m	EA	주소	성명	
1	중로2-83호		군산시 소룡동 1535-15	소매점 , 경량 철골조	H=4.4 m			1	군산시 공단대로 608(소룡동)	나순* 외 1	

군산시 공고 제2020 - 86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지곡동 318-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0년 4월 일

-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18-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중로2-13호선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중로2-13 : L=245m, B=15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23, 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지곡동	326-12	도	9	1	허*주	군산시 회현면 구울2길 9				
2	"	310-12	답	75	72	유한회사**를 여는사람들 최*호 (가등기권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5길 22-12(효자동2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 16-6 (인후동1가)				
3	"	326-13	전	13	13	허*주	군산시 회현면 구울2길 9				
4	"	310-3	대	971	16	송*택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4동 1102호				
5	"	318-4	전	627	494	옥*옥	군산시 나운동 84-1 대명아파트 206호				
6	"	318-3	전	1,355	13	옥*옥	군산시 동지곡길 53, 103동 302호(지곡동, 은파코아푸아파트)	주식회 사 **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지상권	
7	"	326-3	전	664	422	임*식	군산시 지곡동 128				지분 165/664
	"					김*태	군산시 미룡동 577-24				지분 333.8/6 64
	"					백*선	군산시 나운동 786-1 명성타운 나동 202호				지분 165.2/6 64
8	"	산76-6	임	3,173	20	고*길	서울 성북구 석관동 168-32				
9	"	322-2	전	1,094	55	문*자	군산시 축동로 172 (서흥남동)				지분 50/331
	"					고*환	군산시 경암동 645-23				지분 281/331
10	"	326-8	전	658	260	이*원	군산시 신평길 12, 101동 1510호(수송동, 동영임대아파트)	군산** 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수송동 24-13	근저당, 지상권	
11	"	326-9	전	486	484	심*숙	군산시 나운동 489 금호타운아파트 107동 801호				
12	"	산87-2	임	1,587	23	고*영	군산시 금동3길 26-1(개정동)	군산** 협동조 합	군산시 번영로 162	근저당	지분 926/158 7
	"					고*길	군산시 경암동 651-24				지분 661/158 7
13	"	326-5	전	668	105	홍*형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68				
14	"	326-4	전	1,088	536	고*영	군산시 경포천동길 72-1(경암동)	군산** 협동조 합	군산시 번영로 162	근저당, 지상권	
15	"	326-7	전	1,319	144	이*룡	군산시 서흥남동 800-9				
16	"	130-2	전	1,567	176	유*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103동 803호(서신동, 서신이편한세상)				지분 208.28/ 1567
	"					유*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103동 803호(서신동, 서신이편한세상)				지분 208.29/ 1567
	"					송*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103동 803호(서신동, 서신이편한세상)				지분 208.29/ 1567
	"					고*례	옥구군 회현면 금광리 884				지분 446.28/ 1567
	"					구*성	전주시 우아동 3가 728-21				지분 495.86/ 1567
17	"	326	전	162	31	차*순	군산시 지곡동 89				
18	"	326-1	전	1,557	243	이*수	군산시 나운동 155-6				지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롯데아파트 305동 504호				917.9/1 557
	"					김*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2 상산타운 101동 610호				지분 232.4/1 557
	"					김*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605-4 한양아파트 111동 1203호				지분 406.7/1 557
19	"	327	답	1,670	230	이*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81, 103동 805호(평화동2가, 미송평화하이준아파트)	임실** 협동조 합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21	근저당, 지상권	
20	"	327-2	답	1,317	237	유한회사**에 스유테크	군산시 공항로 480, 7호실(산북동)	군산** 농업협 동조 합	군산시 하포로 29 (수송동)	근저당, 지상권	
21	"	327-1	전	1,538	194	강*남	서울 중구 신당동 366-97 서울시니어스타워 1105호				
22	"	산91-2	임	539	79	김*희	군산시 조촌로 214, 902동 501호 (경암동, 경암동제일오투그란데)				
23	"	산92-1	임	1,857	1	최*송	군산시 삼학동 271-8				
합계					3,849						

군산시 공고 제2020 - 874호

# 동부·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자 제안공고

동부·서부 어민복지회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자료 제출 및 선정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4. 14.

##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가. 재 산 명 : 동부 어민복지회관, 서부 어민복지회관

나. 사업대상

재산의 표시	건물	사용용도	사용허가 기간	비고
동부어민회관 (경암동 133외 4필지)	1동 4층 연면적(768.49㎡)	다목적회의실 사무실	허가일로부터 2년	층별로 입찰
서부어민회관 (해망동 1011-19)	2동 1층 연면적(79.86㎡/156.79㎡)	다목적회의실 사무실	허가일로부터 2년	2동 통합 입찰

※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1. 현장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2. 본 입찰 건의 공유재산 사용 용도는 다목적 회의실, 사무실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2. 참가자격

### 가. 일반자격

-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변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법인 단체
- 2) 행정청(전라북도청, 군산시청 등),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인가 또는 등록되었고 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법인 단체
- 3) 상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가. 접 수 일 : 2020. 04. 00. 09:00~18:00까지
- 나. 접 수 처 : 전북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항만해양과(6층)
-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마. 제안서 평가 및 단체선정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바. 선정방법 : 우리시 내부 심의에 의한 선정

## 4. 기타사항

- 가.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자는 제안서 작성지침 등 제안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공유재산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 규정, 지침, 민원 등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시에 법적인 책임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라. 사용 신청자는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마. 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을 지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제출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에 의함

바.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항만해양과(T.063-454-4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제안서요청서 활용 작성

붙임 제안 요청서 1부. 끝.

2020년도

# 제 안 요 청 서

- 동부·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허가 -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 산 시  
항 만 해 양 과

# || 목 차 ||

## I.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형식 .....	2
2. 제안서 인쇄 형식 .....	2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2

## II.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방법

1. 기본원칙 .....	4
2. 제안서 평가방법 .....	4
3. 제안서 제출방법 .....	4
4.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4
5. 기타사항 .....	4

### 【별지서식】

- 1. 【별지 제 1호】 입찰참가 신청서
- 2. 【별지 제 2호】 서약서
- 2. 【별지 제 3호】 위임장

# I . 제안서 작성지침

## 1. 제안서 형식

- 작성 내용(제출부수 10부)

1장 공유재산 사용 목적 및 계획  
 2장 공유재산 유지보수 계획

- 제안서의 형식
  - 구성형식(활자크기 : 12포인트 이상)

장 : 1.1, 2.1, 3.1 → (16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절 : 1.1.1 → (15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항목 : 1) → (이하, 12포인트/휴먼명조)  
       가) -----  
           (1) -----  
               (가) -----  
                   ① -----

- 공유재산 사용 계획서의 본문내용은 쪽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2. 제안서의 인쇄형식

- 제안서 규격 : A4용지(210mm x 297mm)
- 인 쇄 방 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단면, 양면 인쇄 가능)

##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한다.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외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제안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Ⅱ.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방법

### 1. 기본원칙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 기준 등 평가 관련 자료 및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얻어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시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사실)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의 제출은 신청단체 공식 문서로 제출(직접 방문 제출) - 우편접수는 불가 (연락처 명기 : 대표전화)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단체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등록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청 단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 을 지참하여야 등록 및 제출 가능함.

### 3.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군산시 향만해양과 ☎ 063-454-4783

### 4. 기타사항 :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출공문에 명기된 연락처로 통보함.

[ 별지 제1호 ] 입찰참가 신청서

<b>입찰참가 신청서</b>			
<b>입찰자</b>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b>입찰개요</b>	공고번호		
	입찰건명	동부·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자 제안	
<b>대리인 사용인 감</b>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인)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p> <p>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제안서 10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04.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군산시장 귀하</p>			

[ 별지 제2호 ] 서약서

# 서 약 서

법 인 명 :

주 소 :

군산시 공유재산 “동부·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 목적과 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위임장

위 임 장

\_\_\_\_\_는 본 위임장으로서\_\_\_\_\_를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 법인단체를 대리하여 군산시의 「동부·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허가」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심의 등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_\_\_\_\_대표\_\_\_\_\_은 상기 대리인이 본 위임자에 의해 수행하는 또는 수행되게 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건 없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할 것을 동의함.

본 위임장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종료됨.

20    년        월        일

피 위 임 인 :           (서명 )  
직            위 :  
담    체    명 :

위임인(대표자) :       (서명 )  
직            위 :  
담    체    명 :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20-882호>

##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부 의 안 건 -

1	군산시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 사 담 당 관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지 원 과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4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5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6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7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회 계 과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세 무 과
10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지원과
11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
12	쓰레기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집 공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자 원 순 환 과
13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 전 총 괄 과
14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전 총 괄 과
15	군산시 지정계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 축 경 관 과
16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건 축 경 관 과
17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강 관 리 과
18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도 과
19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수 과
20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수 과

2020년 4월 14일

#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20 - 897호

#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승인 공보 고시

- 쇠퇴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5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군 산 시 장

## 1.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4,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

### ○ 지정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비 규모	주요사업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중앙동 군산공설시장, 신영시장 및 중앙상가	177,650㎡	8,000 백만원	환경개선, 활성화사업, 조직운영강화

※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경계도(별첨1)

## 2. 군산시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 ○ 개 요

- 사 업 비 : 80억(국비 40, 도비 8, 시비 32)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업내용
  - 환경개선사업 : 특화거리조성, 점포환경개선
  - 활성화사업 : 특화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세부계획(별첨2)

## 3. 기타사항

### 가. 공보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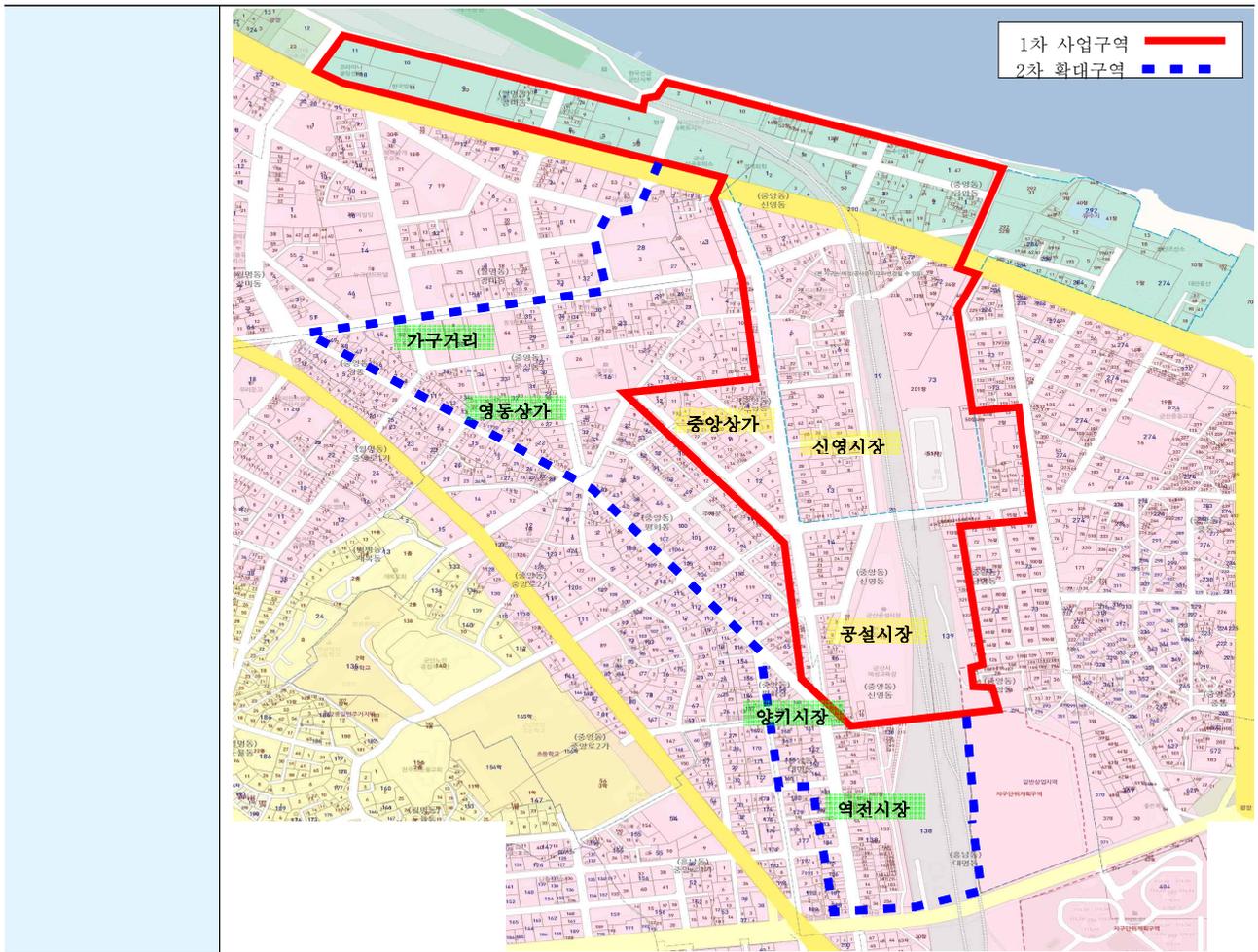
- 게시기간 : 2020. 4. 16 ~ 4. 22(7일간)
- 게시장소 : 군산시 관보 및 군산시 홈페이지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소상공인진흥과(☎ 063-454-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경계도 1부.

2. 군산시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1부. 끝.

【붙임1】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경계도



【붙임2】 사업계획

□ 사업총괄

구분	다시 살아나는장터	새롭게 변화하는장터	모두가 함께하는장터
사업 내용	<b>A-1 거리별특화지원</b>	<b>B-1 창업 및 디자인개선</b>	<b>C-1 상품 및 점포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짬보선창길</li> <li>▪ 군산저잣거리</li> <li>▪ 시간여행거리</li> <li>▪ 도시숲길</li> <li>▪ 국밥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터 창업지원</li> <li>▪ MD, 디자인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아이템 육성</li> <li>▪ 스타점포 육성</li> </ul>
	<b>A-2 수산물특화마케팅</b>	<b>B-2 축제 및 공동마케팅</b>	<b>C-2 혁신상인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장 만들기</li> <li>▪ 수산물 마케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장터거리축제</li> <li>▪ 공동마케팅</li> <li>▪ 군산르네상스마켓</li> <li>▪ 군산시간영화제</li> <li>▪ 장터수다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인아카데미</li> <li>▪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li> </ul>

A. 다시 살아나는 장터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개요	예산 (백만원)
계	7개 사업		<b>2,100</b>
거리별 특화지원	▪ 짬보선창길	▪ 바닷가 음식 마케팅, 해양문화 이벤트	300
	▪ 군산저잣거리	▪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 콘텐츠 구축 ▪ 핵점포 육성 등	400
	▪ 시간여행거리	▪ 중앙상가 골목길 중심으로 시대별 거리 조성 ▪ 디자인 가림막, 간판 덧댐 등	1,000
	▪ 도시숲길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공원을 숲길로 조성	0
	▪ 국밥거리	▪ 메뉴 개선·홍보마케팅 등	100
수산물 특화 마케팅	▪ 덕장 만들기	▪ 신영시장 뒤편 박대건조 덕장 및 공동창고 건립 * 도시재생사업 연계	200
	▪ 수산물 마케팅	▪ 수산물 홍보 및 이벤트	100

**B. 새롭게 변화하는 장터**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개요	예산 (백만원)
계	7개 사업		<b>3,500</b>
창업 및 디자인개선	▪장터 창업지원	▪빈점포 활용한 창업자 유치	500
	▪MD, 디자인 개선	▪MD개편 및 리모델링, 전자유통 및 DB구축	800
축제 및 공동마케팅	▪군산장터거리축제	▪시간여행축제 등과 연계 개최로 상권의 전략적 마케팅	500
	▪공동마케팅	▪상인 주축으로 근현대 복장과 체험프로그램 및 할인행사를 통해 근현대사 체험거리 제공	200
	▪군산르네상스마켓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프리마켓 등 운영	200
	▪군산시간영화제	▪상권거점(도시숲길, 시간여행거리, 수협창고 등)을 활용한 필름영화제 개최	300
	▪장터수다꾼	▪대한민국 나들목 홍보(서울역, 센터럴파크, 용산역) ▪대표 포털사이트 홍보(네이버, 다음 등) ▪유튜버 선발대회, 스타점포 홍보, 만족도조사 등	1,000

**C. 모두가 함께하는 장터**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개요	예산 (백만원)
계	4개 사업		<b>1,200</b>
상품 및 점포육성	▪新아이템 육성	▪新메뉴(제품) 개발 등 지원 ▪차별화 된 제품 및 아이템 발굴 지원	450
	▪스타점포 육성	▪10~15년 이상 점포 발굴→30년 이상 지속 가능토록 지원→소진공 백년가게 선정될 수 있도록 육성	400
혁신상인 육성	▪상인아카데미	▪상인 역량강화, 상인대학, 선진지 견학 등	150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상인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공동상품 개발 지원	200

※ 조직운영비 1,200백만원(별도)